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7. 2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강기윤 · 강대식
김미애 · 金炳旭 · 김상훈
김석기 · 김선교 · 김승수
김영식 · 김 용 · 박대출
박성민 · 박수영 · 박형수
백종현 · 서범수 · 서일준
송석준 · 송언석 · 신원식
양금희 · 오영환 · 유상범
윤두현 · 윤희숙 · 이달곤
이만희 · 이명수 · 이양수
이 영 · 이 용 · 이종성
이채익 · 정찬민 · 조명희
조수진 · 조태용 · 최춘식
추경호 · 한기호 · 황보승희
의원(4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

음.

그러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으로는 시각·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만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57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7조제6항 중 “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舉人”을 “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 ① ~ ⑤ (생략) ⑥ 選舉人は 投票所の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(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)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, 視覺 또는 身體의 障礙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舉人は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 ⑦ · ⑧ (생략)	제157조(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</u> -----. ⑦ · ⑧ (현행과 같음)